

“종단내외 신선한 바람 불고 있다”

제183회 임시중앙총회 개최

의장 보선스님 “산적한 법안 성안·공포”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무행정 지원” 당부

조계종 중앙총회가 지난 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3회 임시총회 개최식을 거행하고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최식은 중앙총회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이 참석했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 회계위원장 법등스님, 교육위원장 현응스님, 포교위원장 혜승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배석했다.

제183회 임시총회 개최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총회의원으로 당선된 직능대표 세영(행정)·보광(선원)·오심(율원)·정산(문화) 스님과 교구대표 이암(제13교구 쌍계사)·무관(제14교구 범어사)·우석(제19교구 화엄사) 스님의 의원선서가 진행됐다.

중앙총회 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제33대 총무원이 출범하면서 종단 내외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앙총회는 종도들을 대표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입안하는 입법기관으로, 산적한 법안들이 의원스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성안되어 공포되기를 종도들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의 현안 문제와 중장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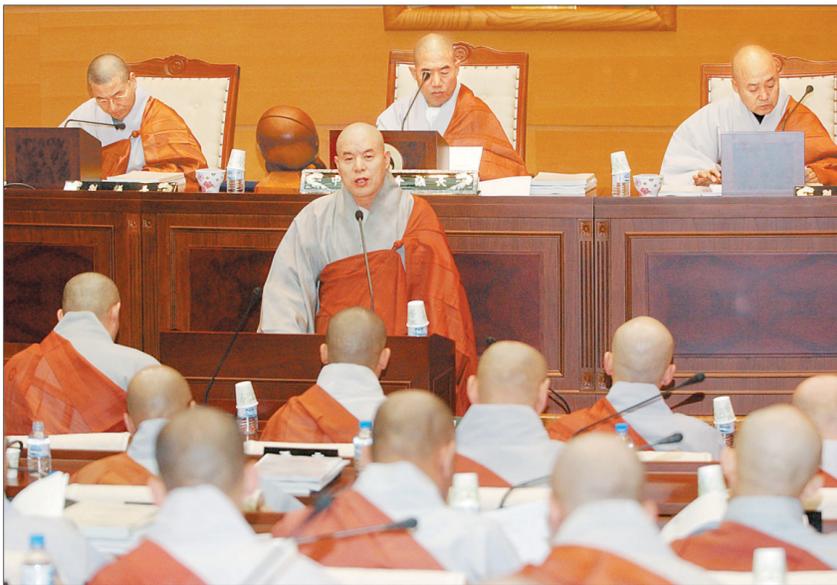
제에 대해 중앙총회와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며 11대 핵심과제와 25개 주요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려하고 멋진 종책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종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무행정 집행과 사업추진을 하겠다”면서 중앙총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인사말 전문 3면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휴회한 뒤 속속한 본회의에서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 사찰 결산 검사를 진행한 후 10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8일 현재)

이번 임시총회에는 △동국대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승려법 개정안 △군중특별교구법 개정안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보고의 건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 등 주요 현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한 △주지인사 고과제 시행(월우스님) △종단 선양을 위한 호법성인 추모(태연스님) △승려 사유재산 중단 출연령(종성·주경스님) △토지저분금 및 대토현환(승연스님) 등 27건의 정책질의가 접수됐다.

한편 제183회 임시총회 개최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와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스님 등 30여 명이 방청을 했다. 회의장이 비좁아 상당수 스님들은 국제회의장 밖에 있었다. 통도사와 월정사 스님들은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 중회 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상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명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총회 의장 보선스님을 면담하고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제183회 임시총회가 지난 8일 5일간의 회기에 개회했다. 개회사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무행정에 대한 중앙총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sooljoo@bulgyo.com

도법-혜국-정우-명진-수불-혜인-홍선-금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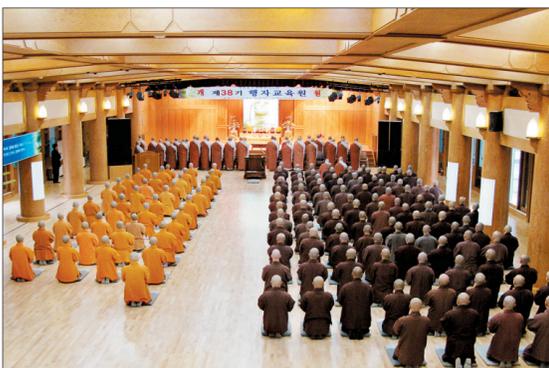
‘발심과 원력’ 상징...초청강연 ‘눈길’

38기 행사교육원 개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제38기 행사교육원을 지난 5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사에서 개원했다. 남행자 108명 여행자 41명 등 총 149명의 행자가 참여했으며 교육은 오는 27일까지 23일간 계속된다. 교육수료자는 3월26일 5급 승가고시를 치르게 되며 합격자에 한해 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발심과 원력’이 눈에 띈다. 현재 종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스님들로부터 출가동기와 수행담, 포교 노하우를 듣는 릴레이 초청강연 회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을 시작으로 총주 석종사 금부선원장 혜국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제주 약현사 회주 혜인스님,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홍선스님, 해남



제38기 행사교육원이 지난 5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사에서 개원했다. 총 149명의 행자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까지 23일간 계속된다.

미화사 주지 금강스님이 법사로 나서 행자들에게 공부의 바른 목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계율과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등을 배우며 수행자로서의 기본자질을 익힌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인사말에서 “여러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배우고 전하며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며 “3주 간의 교육을 원만히 이수해 수행자로서 희망찬 첫발을 내딛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자연공원 사찰 납골시설 적법”

대법원 “허가대상 아니다” 판결...금선사 승소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납골시설 설치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시환)은 서울 금선사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찰 납골당 설치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교 사찰 내 납골당 설치에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 내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자연공원의 경관을 해지거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지난 2월25일 판결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인 금선사는 지난 2006년 제출한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이 “시설납골당 설치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이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납골당 운영은 불교의 포교나 사찰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청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불교는 일찍부터 화장문화의 전통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지구 내에 위

치한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통사찰의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에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경관을 해지거나 자연공원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청의 허가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신야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원의 입장은 전통사찰에서의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우리 전통의 장례풍습에 부합하며, 불교 전래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의 특색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선사 주지 법안스님은 “신도들을 위해 마련한 소규모 봉안시설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소송에 시달려 혼란을 느꼈을 신도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무연고 노인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한 공간도 확보해 봉안시설이 있는 연화당을 조그만 쉼터로 꾸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교정위원 위촉장 ‘법명’도 쓴다

법무부 교정본부 “4월부터 시행” 본지에 밝혀

전국 51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스님들의 교정위원 위촉장에 속명과 함께 법명도 기재된다. 교정위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는 “스님 등 성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는 4월 발급되는 교정위원 위촉장에는 속명과 함께 법명이나 세례명 등을 함께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한 지방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스님의 본지 제보에서 시작됐다. 신종플루 확산과 위촉장을 건네받은 스님은 “대우를 받았다고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명 대신 법명을 쓰는 스님에게 교정교화활동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위촉장을 주며 속명만 기재한다는 것은 수행자에 대

한 기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장관’ 명의로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발급되는 교정위원 위촉장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행이라며 속명만 기재돼 왔다. 교정본부는 속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법명이나 세례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어떨지는 본지의 요청을 받아 오는 4월 새롭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재위촉되는 스님과 신부에 대해 우선 ‘속명(법명 또는 세례명)’ 방식으로 이름을 기재하기로 했다.

교정본부의 속명과 법명의 병기를 계기로 관행을 이유로 각종 서류나 위촉장 등에 속명만 기재하던 민·관의 성직자에 대한 호칭 변경이 기대된다.

박인택 기자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전개

2010년 후원회 소신희망의 보시를 실현해 보세요!!

- 지역연동 복지당기 후원회 후원금 100% 지원
- 1백~100원~10백 모금방식
- 지역연동 모금행사
- 인기 나눔기

대한불교조계종 | 재단법인 '불교나눔' | 대한불교조계종 후원회 후원금 100% 지원

저소득·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전개 7면

재추진 하는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계획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3년 1월 대법원은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살리기 정책 때문인지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 중이고 ‘포크레인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 시점에 이르렀다.

법보종찰 해인사 산너머에 숲을 밀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비보를 접하며 산승(山僧)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12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해인사는 근래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자연공원법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가야산 국립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예정지 32만평 중에서 약 11%가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야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부당할 것이다. 세계 역사상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국립공원으로써의 지정 의미’를 더욱 강화하여 숲을 가꾸는 실정이다.

해인사는 여러 분의 중정 예하(猒下)를 배출하였고 한 산중(山中)에서 가장 많은 비구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정진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도도량이다. 특히 해인사가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과 ‘팔만

대장경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가야산은 민족문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은 연기론의 관점을 보더라도 불가분의 관계로써, 가야산의 수려한 산세와 해인사는 한 몸 한 생명이다.

골프장 관광개발 이익에 따른 지역주민 간에는 입장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또 경계를 살려야 하는 절박성이 있더라도,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역사문화유산과 문화경관’으로써의 무한한 가치는 바로 지금 당장의 ‘돈벌이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맞바꿀 수 없다.

현 해인사 주지스님이 “가야산 골프장 건설이후 최경주 선수 골프대회를 연다면 해인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골프장 건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가히 충격이며 경솔한 처신이다.

해인사는 여타 다른 사찰과 동등하게 비교 할 수 없으며, ‘법보종찰’로써 차지하는 한국불교에서의 절대적인 상징성 하나만이라도 가야산을 ‘문화경관과 수행환경’으로써 온전히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반대에 서명했던 100만명의 염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인사는 가야산을 수호하기 위한 호법신장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 혹은 불교종단은 가야산 골프장 예정지를 매입하여 더 이상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라는 세상 부끄러운 시비꺼리가 종식되면 한다.